



알바의 시작과 끝
이것만 알면
당당해질 수 있다!

알바 노동자 권리 가이드북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료

- ☐ 구인광고 캡처본
- ☐ 근로조건이 정확히 적힌 근로계약서
- ☐ 받은 임금이 찍힌 통장
- ☐ 일한 날짜, 시간 등을 적은 근무일지
- ☐ 기타 나의 근로조건을 증명할 자료



자료가 없다고
신고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꼭 센터로 연락주세요!

1588-6546

QR코드로 광주알바지킴이 카톡 채널 추가하세요 +

CONTENTS

1 알바 시작할 때, 필수 체크 사항임! 04

구인광고 캡처
필요한 서류 챙기기
근로계약서 작성

2 알바할 때, 필수 체크 사항임! 08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감정노동

3 알바 그만둘 때, 필수 체크 사항임! 15

퇴직금
부당해고
알바피해상담





**알바 시작 할 때,
필수 체크 사항은?**



구인공고 캡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본인의 근로조건을 증명할 자료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때를 대비해 구인공고 사이트를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놓는 등 미리 자료를 수집해 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챙기기!

원칙적으로 알바가 가능한 나이는
만15세 이상이어야 해요.
(만 15세 이하여도 일을 했다면, 임금은 지급받아야 해요.)

만18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친권자(후견인)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신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 때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알바 노동자 근로계약서 필수체크항목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종류, 근로시간,
근무요일, 휴일, 휴가, 휴게시간,
임금(시급)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후, 사업주와 노동자가 한 부씩
나눠 갖는 것이 법에서 정한 약속!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둡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기로 했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법에 위반된 근로계약서 부분은 무효!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_____(이하, 사업주)과(와)_____(이하, 근로자)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시작일만 기재)
2. 근무장소:
3. 업무내용:
4. 소정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5. 근무일: 매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 근무 (※근무 요일에 동그라미)
6. 휴일: 매주 요일
7. 임금
- (월, 주, 일, 시)급: 원
- 기타수당: (있음, 없음) 원, 원,
- 임금지급일: 매월 (매주 또는 매일) 일
-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 입금,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8.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9. 만 18세 미만 법정 서류 제출 여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10.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
하
부

사업주	근로자
사업체명 : (연락처 :)	주소 :
주소 :	연락처 :
대표자명 : (서명)	성명 : (서명)



**알바 할 때,
필수 체크 사항은?**



최저임금!

1시간을 일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해요.

2021년 최저임금 = 시간당 8,720원

2022년 최저임금 = 시간당 9,160원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2021년 기준 월1,822,480원, 2022년 기준 월 1,914,44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사업주와 약속했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임금을 받은 통장 사본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에 비해 못 받은 만큼의 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단!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단순노무직 (주유소, 전단지 배포, 배달 알바 등)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을 하지 않으면 매주 발생하는 수당이에요.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

$$\frac{\text{1주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40\text{시간}} \times 8\text{시간} \times \text{시급}$$

스케줄표 등에 의해서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4주 평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시간!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이 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이에요. 단, 당사자가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을 한도에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어요.

만 18세 이상이라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어요.

하루 4시간 일을 했다면 30분 이상, 8시간 일을 했다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받아야 해요.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관리 감독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해요. 보통은 식사시간으로 사용을 하고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거나,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

다음과 같이 일할 때를 연장·휴일·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때 정해진 임금(시급) 보다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연장근로란?

- ☐ 약속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때
- ☐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때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 7시간, 주35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때)

휴일근로란?

- ☐ 정해진 근무일이 아닌 날에 일할 때
- ☐ 국가공휴일에 일할 때 (2022년 1월 1일부터)

야간근로란?

-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할 때



산업재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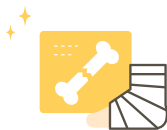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는 참지 말고
즉시 함께 있었던 동료와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나 혹은 타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어도, 업무 중에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국가로부터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즉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다면?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상급자 또는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고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힘들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사업주는 노동청 신고로, 상급자와 동료는 사업주에게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감정 노동으로 힘들다면?

고객 응대 중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다면,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알바 그만 둘 때,
필수 체크 사항은?**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노동자가 일을 그만 둘 때, 임금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 돈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해요.

1년 동안 일을 했다면 약 한 달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text{퇴직금} = 1\text{일 평균임금} \times 30\text{일} \times \text{재직일수} \div 365\text{일}$$

1일 평균임금은 퇴사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 동안 달력상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사하고 못 받은 임금 및 퇴직금은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받아야 합니다.





부당해고

하루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 사업장

- ☐ 해고를 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
- ☐ 30일 전 해고 예고를 받지 않았다
- ☐ 해고 사유와 일시가 적힌 종이를 받지 않았다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당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하는 사람이 5인 미만 사업장

즉시 해고는 부당해고!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해고预告를 받아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노동청을 통해 사업주에게 30일분 이상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알바피해상담!

일을 하다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나요?

최저임금, 주휴수당, 부당해고 등
권리침해를 당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상담할 곳을 못 찾았나요?

알바지킴이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1588-6546 직통전화로 연락주세요!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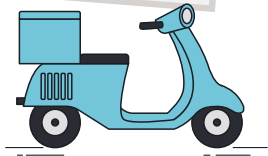
모바일로 상담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
‘광주알바지킴이’ 추가하고
익명으로 손쉽게 상담해요!

당당한 알바 5대 수칙

1. 근로계약서 나도 가지자
2. 최저임금 이상 받자
3. 주휴수당은 내 권리다
4. 일하다 다치면 산재다
5. 부당하면 ☎ 1588-6546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청년·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번호!

알바지킴이상담센터

1588-6546

**최저임금! 주휴수당!
부당해고! 산업재해!**